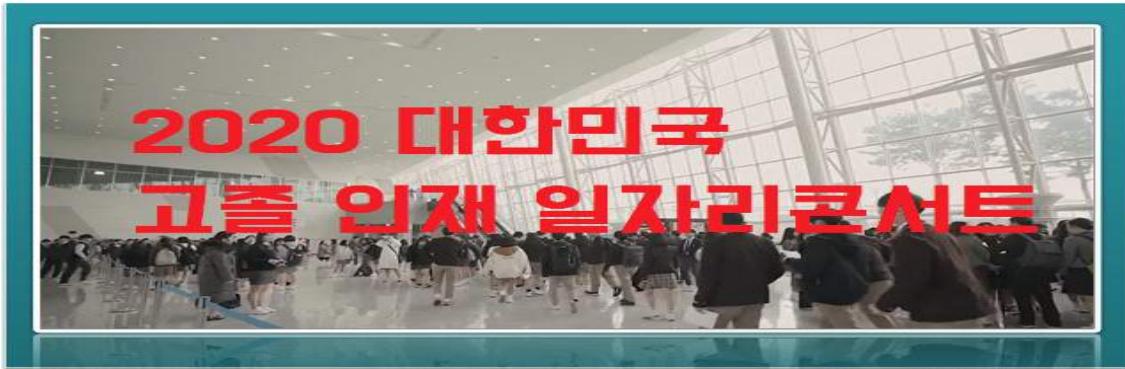


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

****참여전,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 ▶ **슬로건:** 꿈을 위한 도전
- ▶ **목적:**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실업해소 및 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
- ▶ **기간:** 2020년 3월 25일(수)~26일(목) [2일간] |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
※ 개막식 일정 : 2020년 3월 25일(수) 9:40 ~ 11:10
- ▶ **장소:** 일산 KINTEX 제2전시장 6홀 (www.kintex.com)
- ▶ **참가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재학생, 취업담당 교사, 학부모
일반 신입, 경력 구직자(관련기업 참가 시) 등
- ▶ **규모:** 약 100개사 170부스(5,673㎡), 3만명 관람 예상
- ▶ **참가기관(학교):** 총 100개사 170개 부스 (* 현장채용 65개사)
 - 대기업관: 약 15부스 - 금융기업: 약 15부스
 - 공공기관: 약 20부스 - 중견(소)기업: 약 45부스
 - 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사이버 대학 등: 약 25부스
 - 산학관: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중등직업교육 선도학교 등: 30부스
 - 기타 부대행사 등: 약 20부스
- ▶ **구성:** (전시) 채용·상담관, 취업정보 특별관 등
(부대행사) 채용특강·설명회, 진로특강, 진로컨설팅 등

일시	2020년 3월25일(수)~26일(목)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홀		
참가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재학생, 일반신입, 경력구직자(관련기업참가시) 등		
행사구성	채용·상담관, 취업정보 특별관 등 △부대행사		
주최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제신문		
주관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제신문		
기업신청기간	,	개인신청기간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2-360-4509	FAX	--
담당자		E-MAIL	@
사이트(출처)	http://www.gojobcon.kr/main/main.php		

*자료출처 : <http://www.gojobcon.kr/main/main.php>

□ 2020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중견기업과 함께
내일을 보다

202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2020. 03. 30(월) 10:00 – 17:00 | COEX B1 Hall

www.fome-job.com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주관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

일시	2020.03.30(월)		
장소	서울 강남구 Coex Hall B1		
참가대상	우수 중견기업 80개사 이상, 참여 구직자 4,000명 이상		
행사구성	채용상담관, 심층면접관, 취업특강, 개막식, 부대행사관 등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		
기업신청기간	~ 2020.02.21(금)	개인신청기간	2020.03.02(월) ~ 03.30(월)
문의처	02-6365-7008	FAX	02-393-8210
담당자	박람회 운영사무국	E-MAIL	career@kedisco.com
사이트(출처)	http://fome-job.com		

*자료출처 : <http://fome-job.com>

□ 2020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일시	2020.4.6.(월)-4.7.(화), 09:30-18:00		
장소	COEX C 1-2홀		
참가대상	취업을 원하는누구나 , 참가기업 약 150개사, 방문구직자 약 15,000명		
행사구성	(채용상담관) 기업-구직자 1:1 또는 1:多 현장상담 외 기타 부대행사		
주최	산업부, 서울시		
주관	KOTRA, 금감원		
기업신청기간	주관측에 문의	개인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전등록및 행사당일참석
문의처	02-3460-7846	FAX	--
담당자		E-MAIL	jf@kotra.or.kr
사이트(출처)	http://www.jobfairfic.org/v20/		

*자료출처 : <http://www.jobfairfic.org/v20/>

튼튼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올해엔 더 좋아져요

- 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고려한 밀착형 구직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에 대해 청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올해 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작년에 처음 실시된 지원금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구직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긍정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사례 >

■ 지원금과 심층 상담을 통해 제 꿈을 정하기 위한 발걸음을 디뎠어요!

- 저는 하고 싶은 직무도 없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지원금 지급과 심리상담을 해준다는 내용을 보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나의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언이 간절했고,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공부에 더 매진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에 더하여 3차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저는 상담사님과 제 상황을 공유하고, 관심 있는 직무를 정하고,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전시회 기획자의 꿈을 가지고 지원해서 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 전시회 기획자 희망

- 한편, 참여자에게 제공된 고용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 작년 지원금 참여자들에 따르면 1대1 맞춤형 상담은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특강 등의 대규모 강의, 의무적 취업 관련 동영상 시청*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청년들은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전, 취업관련 동영상 1개를 의무적으로 시청

- 제도 운영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올해는 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 우선 기존에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관내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 * 청년 특성·수요 반영, 소규모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직종별, 구직준비도별 등)
 - **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집중 취업 알선 등 개인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기존에는 희망하는 청년만 고용서비스에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월별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은 상담 후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는 "부실*" 판정을 받게 된다.
 - * (보고서 부실판정 시 처리기준) 1회 → 경고(재발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림)/ 2회 →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 3회 → 지급 전면 중단
- 매월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했던 취업 관련 동영상의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는 평가를 반영하여 의무수강 제도는 폐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19년)		개편('20년)	
고용서비스 연계 대상	희망하는 청년	고용서비스 연계 대상	필요한 청년에게 참여 의무 부과 (구직활동 계획 부실, 구직준비도가 낮은 경우 등)
연계 서비스 유형	대규모 강의형 취업특강	연계 서비스 유형	직종, 구직준비도 등 청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취업 관련 동영상	보고서 작성 전 의무적으로 시청	취업 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 폐지

□ 이러한 지원금 개편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한 사전준비이기도 하다.

○ 양질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 구직준비도에 따라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개인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안)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과 밀착하여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 “올해에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전윤아 사무관(☎044-202-7493), 이호준 사무관(☎044-202-73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청년은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 * ▲대학 진학률: (한국) 69% (경제협력개발기구) 43% ▲취업 준비생: 2005년, 35만 명(청년 인구 996만 명) → 2018년, 50만 명(청년 인구 915만 명) ▲첫 취업 소요 기간: 2005년, 9.4개월 → 2018년, 10.7개월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지원에 필요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 등을 감안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2019년)
 - ※ (2017~2018)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신설·지급
 - (2019)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지급
 - (2020)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2 제도 개요

- (지원 대상) ①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만 18~34세 청년 중 ③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 (가구소득)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20년)
 - (나이) ①만 18세: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②만 34세: 고학력화·병역기간·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감안
 -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지원 내용) 월 50만 원* x 6개월**, 지원 중에 취업하면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 지급
 -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설문 조사(한고원, 2018.1월): 취업준비 소요 비용 월 45.3만 원
 - 청년취업준비자 실태 조사(청소년정책연구원, 2017.4월): 취준생 월 생활비 49.8만 원
 - ** 평균 취업 준비 기간(10.7개월, 통계청 경찰 부가 조사, 2018.5월)의 절반 수준

< 취업성공금 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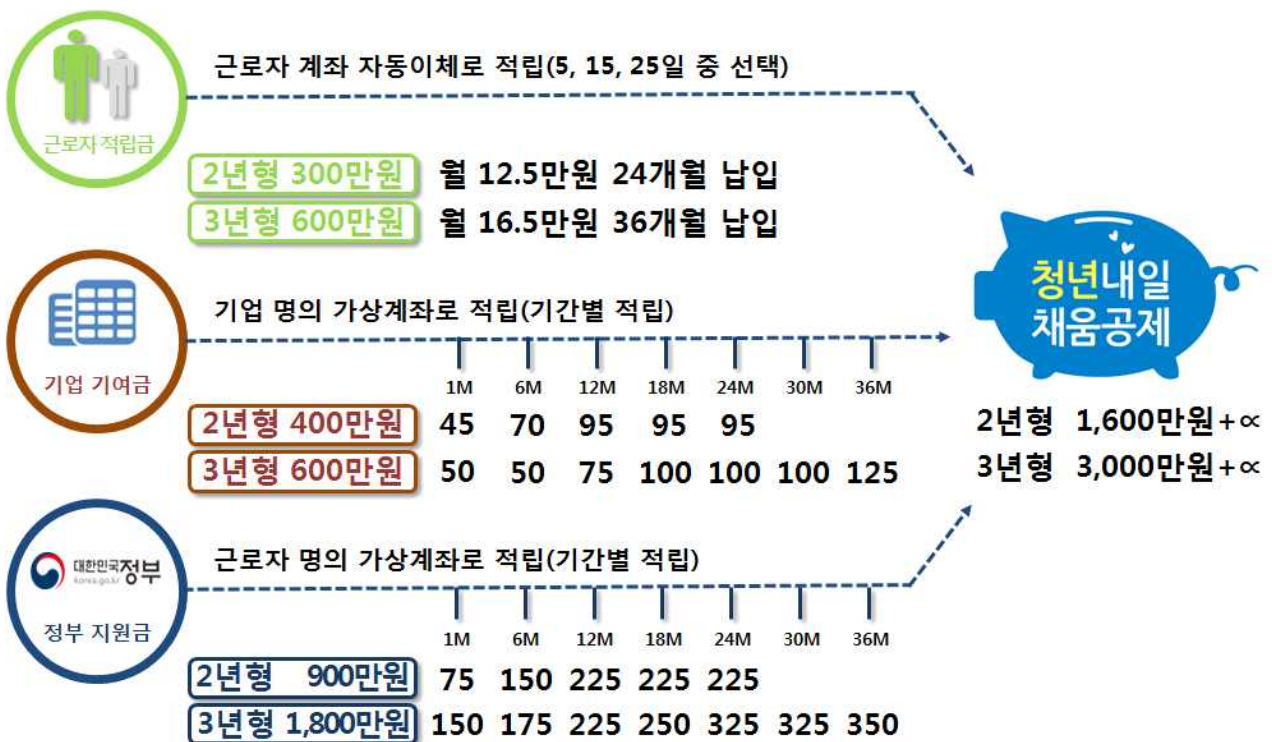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 원 지원
-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지원 방식) ① 사행성 업종, 고가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② 현금화 불가능한 클린카드
-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고용노동부)
- (전달 체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과)
- (지원 절차) 하반기 구직 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매월 선정,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대상선정) 온라인 신청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 순위(졸업 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경험)를 반영해 배정 범위 안에서 예비교육 대상 선정
- * 가구 소득, 졸업 후 2년 이내 여부, 구직 활동 계획서 등 → 구직 활동 계획서가 사업 목적에 맞는지 모호할 경우 심사위원회(월 1회)에 회부
- * (구직 활동 인정 범위) 어학학원 수강, 공부 모임(그룹 스터디) 등 폭넓게 인정
- (예비교육) 예비 교육* 진행 및 지원 대상 확정
-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 방법, 구직 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 카드 신청 및 카드사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은 월 1회 구직 활동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 (프로그램 지원) 직종별 등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현직자 상담(멘토링), 직무 분석 교육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③ '20년 예산: 1,642억 원 지원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

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 검색

1	고용창출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심사형, 요건형)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심사형)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심사형) 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규직 전환지원(심사형), 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 ③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심사형), ④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4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2 중복지원 사업 대상

양 장려금	중복 시	지원 비율
일자리 함께하기 (100%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 70% 추가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100% 추가지원

3 문의처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 02-2171-1800~5)

○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창 장려금 공출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40만원, 1~2년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만15~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 사업주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3년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고안 장려금 공정금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기업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휴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월30만원(대규모기업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장년· 고령자 고용 장려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사항 별도 문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수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 다만, 일지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분기별 신청), 최대 2년간 지원